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관련 질의답변
Q&A

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

목 차

1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관련 Q&A	1
2	소득공제 적용대상 도서구입, 공연관람 사용금액 사례	3
3	도서 및 공연티켓 판매 사업자 관련 Q&A	9
4	카드사, 은행, 결제대행사 등 관련 Q&A	23
5	개인 근로소득자(구매자, 소비자) 관련 Q&A	26

1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관련

Q01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 사용금액(이하 '도서·공연비')의 소득공제 제도가 무엇인지?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27호, '17.12.19., 일부개정)에 따라 '18.7.1.부터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 등으로 사용한 도서·공연비가 근로소득자 '18년 귀속 연말정산 시('19년 1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됨.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15%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500만 원)이지만, 도서·공연비는 공제율이 30%이고,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Q02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일이 '18.7.1.자로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인지?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의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의 시행일이 '18.7.1일이므로 소비자가 '18.7.1.부터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을 위한 공연티켓 구입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임.

- 다만, 연말정산을 통한 실제 소득공제는 '18년 귀속 연말정산 시('19년 1월~)부터 적용됨.

Q03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음.

⇒ 근로소득자가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을 갖추고 도서·공연비 사용금액 자료 수집·확인이 가능한 사업자*로부터 도서와 공연티켓을 구매할 경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이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와 국세청에서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을 갖추고 사용금액 자료 수집제공이 가능한 사업자를 파악, 국민 및 국세청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신청·접수를 받아 사업자로 확정하고 이들 사업자 명단 등 현황 검색서비스 제공

⇒ 동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법인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소득공제 적용 대상임.

- 따라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사업자가 아닌 자료부터 도서, 공연티켓을 구매(개인 간 거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되지 않음

⇒ 또한 실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때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원천징수자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에서 증빙으로 첨부제출 가능한 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등*이 발급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로 정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기명식선불카드업자 포함), 전자금융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등을 말함

⇒ 따라서 연말정산 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금액 확인 등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오프라인 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 플랫폼 등)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한 자료가 수집(전송)되어 국세청, 신용카드업자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Q05

신용카드 등과 마일리지(회원 포인트), 신용카드 등과 상품권 등의 여러 수단이 복합된 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 ⇒ 도서, 공연티켓 구매, 결제 완료 후 카드사 등을 통해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한 사용금액에 대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함.
- ⇒ 상품권을 통해 도서·공연티켓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용금액만큼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 고객의 구매/결제 내역을 구분하여 카드사 등에 전송하거나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소득공제 적용 가능함
 - 그러나, 포인트 결제는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기는 하나 현금성이 없고, 결제단계에서 신용카드 등 결제 총액에서 감액되는 형태로 이용되어 실제 카드사 등에서 승인되는 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Q06

핸드폰 소액결제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 핸드폰 등 소액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도서·공연티켓을 구매·결제한 경우, 현재 이동통신사에서는 기술적으로 도서·공연비만을 구분(추출)하여 카드사, 국세청 등에 자료를 전송할 수 없으므로 도서·공연비 확인 및 증빙이 불가하여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음

Q07

카드 결제시점(귀속년도 내)과 결제 취소시점(귀속년도 이후)이 다른 경우 소득공제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 ⇒ 카드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결제가 취소되면 해당 귀속년도 사용금액에서 차감되고 이후에 결제가 취소된 경우 다음 과세연도의 사용금액에서 차감됨.

Q01

도서구입, 공연관람에 사용한 금액(도서공연비) 관련, 도서 구입비에서 말하는 도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소득공제 도서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다만, 전자책의 경우 ECN 포함)이 기록된 간행물로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이 포함됨.

- 도서 구매에 수반되는 국내배송료 등은 도서구입비에 포함됨.

* ISBN :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법 제21조에 의거 발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로 978, 979로 시작하며 총 13자리('07년 이전 발행된 경우 89로 시작, 총 10자리)로 구성

** ECN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문체부 고시 2017-38호, '18.1.1일)에 의거 콘텐츠식별체계(UCI)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사)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발급하는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Q02

종이책이 아닌 전자출판물을 구입하여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지?

☞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기록된 전자책은 도서에 포함됨.

- 다만, 전자책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로 ISBN 외, ECN도 포함하여 인정됨.

Q03

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을 구입하여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지?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주·월·계간지 등 잡지 및 정기간행물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Q0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이 표기된 간행물 중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간행물이 있는지?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록사항이 표기된 간행물이라 하더라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해간행물(반국가·반사회·반윤리적 내용)로 결정되어 고시된 간행물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Q05

중고책을 구입하면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 중고책은 재판매 목적이 아니라, 독서나 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도서를 판매 사업자가 다시 판매하는 도서를 말함.
-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가 표기된 중고책은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임.

Q06

도서와 문구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도서 상품이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 도서와 문구를 결합한 상품이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한 ISBN을 부착한 상품(일종의 세트/결합 도서상품)이면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이나,
- 도서와 문구를 단순 결합하여 판매하는 상품(도서에만 ISBN 발급)은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Q07

도서 대여를 위해 지출한 금액도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의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출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대여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Q08

도서구입, 공연관람에 사용한 금액(도서·공연비) 관련, 공연관람에 사용한 금액, 즉 공연비에서 말하는 공연이란 무엇인지? 공연비 인정 범위는?

- ☞ 공연법 제2조 제1항에서 공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1.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 위 공연법에 따라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등’ 공연의 장르(분야)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공연은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 출연자가 무대 등에서 실제 연기하는 등 ‘실연’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녹화 영상(영화, 방송 등) 관람 행위는 공연에 포함되지 않음.

- ☞ 위와 같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티켓(관람권, 입장권 등)을 구입하며 지출한 금액을 공연관람 사용금액, 즉 공연비라 하며,
- 공연티켓 구입 가격에 포함 또는 공연티켓 구입에 수반되는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공연비에 포함됨.

Q09

온라인 상 판매되는 공연티켓의 종류 중 공연티켓에 부가상품, 서비스 포함된 경우, 이러한 공연티켓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지?

- ☞ 동일한 공연의 관람을 위한 공연티켓의 하위 권종 형태로 판매되는 부가상품, 서비스를 포함한 공연티켓(예시 : 공연+프로그램북, 공연+CD/DVD, 공연+음료 등)이 온라인 상에서 판매될 때, 아래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
- 상기 공연티켓이 동일한 공연의 관람을 위한 공연티켓의 하위 권종(종류)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고,

- 부가상품, 서비스가 불포함된 공연 관람만을 위한 공연티켓 권종도 함께 존재한다면 공연관람이 주 목적이라 보이므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됨
- ※ (예시) 000뮤지컬 공연의 공연티켓 내 여러 개의 공연티켓 권종* 판매 되는 경우, 부가상품인 프로그램북 제공이 포함된 공연티켓은 소득공제 가능 공연티켓에 포함
- * (공연티켓 권종) 요일별 공연티켓, 할인 공연티켓, R/S/A/B 등 좌석위치별 공연티켓, 특별 프로모션 공연티켓(당해 공연 프로그램북 제공 포함)) 등
- 그러나, ‘호텔 숙박+공연 패키지’ 나 ‘지역관광+공연 패키지’ 등의 복합상품처럼 구입비용 결제가 공연티켓 예매처 등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 아닌 호텔이나 여행사 등에서 결제되는 경우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Q10

오프라인 공연시설, 공연장, 공연기획사 등이 운영하는 매장 등에서 공연 프로그램북, 캐릭터 상품 등 MD상품을 구입하며 지출한 금액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 ⇒ 공연티켓과 별도로 판매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상품에 지출한 금액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Q11

공연장 등에서 상영하는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 중계물을 보기 위해 공연티켓을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공연장에서 연극, 뮤지컬, 오페라, 교향악 등 공연 녹화영상이나 실황 중계물을 관람하기 위해 공연티켓의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 이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됨.

(예) 국립극장 NT라이브, 예술의전당 싹온 스크린 등 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임

- ⇒ 그러나, 영화관에서 영화티켓의 형태로 판매, 발권하는 경우(예 : 00시네마 신년 음악회 실황 Live, 오페라 상영, 해외 페스티벌 등)는 티켓 및 이에 대한 결제, 매출 자체가 영화티켓 판매로 인식되므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Q12

공연예술로 특화된 축제/행사(예 :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등) 관람권,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 공연에 특화된 전문 공연축제/행사이거나, 축제/행사가 공연이 주목적인 경우 또는 공연이 축제/행사의 프로그램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공제 적용 대상임.

(요건) ‘공연명, 공연장소, 공연시간, 출연자(아티스트)’ 등이 티켓 등에 표기되어 있고, 공연티켓 형태로 가격이 책정되어 유료 판매될 경우

(예) 평창대관령음악제 기간 중 000 앙상블 공연, 통영국제음악제 △△△ 실내악 콘서트, 페퍼00페스티벌, 인디음악축제 등

Q13

문화관광축제 입장권, 일반적인 축제/행사 티켓, 관람권 등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 기존 티켓 예매처 웹사이트 등에서 주로 공연이 아닌 전시/행사 등의 메뉴(카테고리)에 등록되어 판매되는 티켓, 상품 등이 대부분이 위 경우에 해당하며,

- 상기 12번 질문·답변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축제 입장권, 행사 티켓을 구입하여 지출한 금액이라도 공연비로 볼 수 없어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예) 00음식축제 입장권, 00꽃박람회 입장권, 초대권 등

Q14

온라인 중고티켓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플랫폼, 사이트 등에서 중고티켓을 구입하며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개인 간 거래로 공연티켓을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중고티켓 거래사이트 등에서 거래, 판매되는 중고티켓, 개인 간 거래되는 중고 공연티켓 등을 구입하며 지출한 금액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이는 중고 공연티켓의 경우, 판매 가격이 명확하지 않으며 책정된 가격이 과도하거나 가격이 비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판매가격을 알기 어려움을 고려한 것임.

- 특히,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가격을 책정한 중고 공연티켓 거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티켓 다량 구매 후 고액으로 되파는 행위 등 불공정

한 거래가 혼재되어 있고, 여러 차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소득공제 적용 대상 공연비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법인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동 법에 따라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 사적으로 거래되는 공연티켓, 중고 공연 티켓에 대해서는 국세청, 신용카드업자등에서 사용금액 확인 등이 불가능하므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근로소득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온오프라인 가맹점, 매장(시설),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도서와 공연티켓을 구매할 경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을 의미

Q15

공연비 관련, 공연 단체 및 공연장별로 유료회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료회원 가입비도 공연비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공연단체 및 공연장별로 운영하는 유료회원(후원회 등 포함) 가입비는 공연비에 포함되지 않음.

- 대부분의 공연 단체, 공연시설(공연장) 등에서는 각자의 특성과 여건 등에 맞는 다양한 회원제도를 운영하고 회원제의 회원등급/유형에 따라 다양한 혜택(연간 티켓 가격할인, 티켓 추가제공, 안내책자 발송, 회원 전용라운지 이용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 유료회원, 후원회비 등은 이러한 다양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개인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하는 것이므로 유료회원 가입비가 특정 공연관람을 위한 공연티켓 구입에 사용한 금액, 즉 공연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Q01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요건은?

☞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법인세법 제1조,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법인*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하여, 국세청(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국세청에서 부여받은 고유번호증(고유번호) 필요

☞ 또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는 사업자 유형별로 정한 기술적 조치를 완료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하여 확정된 사업자를 의미함.

Q02

도서·공연티켓 판매 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하기 전에 조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 사업자의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의 가맹점번호, 단말기 등에서 도서·공연티켓 매출, 결제만 발생하도록 가맹 추가, 분리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완료해야 함

- 기술적 조치는 사업자 유형(온/오프라인 사업자, 단일/복합 사업자, 가맹점번호 보유 형태 등)에 따라 상이함. 사업자별로 필요한 기술적 조치는 ‘매뉴얼’을 참고하기 바람.

Q03

온라인 판매업자란?

☞ ‘온라인 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2조(정의)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를 의미함.

- 온라인 판매업자가 도서, 공연티켓, 도서+공연티켓 또는 이외의 재화를 결합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회원사(위탁자)와 위 재화 판매와 관련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를 대행

(예) 티켓 예매처,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방송 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및 매출발생 명의 등이 온라인 판매업자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음.

Q04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및 입점 사업자란?

⇒ ‘온라인 판매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2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의미함.

- 온라인 상에 재화 등을 거래·판매할 수 있는 사이버몰(가상의 영업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른 판매자(입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알선하는 사업자(재화를 직접 판매하지 않음)

*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이 입점한 개별사업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음.

⇒ ‘입점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서, 자신의 매장·쇼핑몰 등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타 판매중개 플랫폼에 입점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입점 사업자로 구분됨.

(예) ○○홈쇼핑에서 홈쇼핑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지만, ○마켓 사이트에 입점하여 재화를 판매하기도 함

Q05

단일 사업자와 복합 사업자는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 ‘단일사업자’는 도서 또는 공연티켓, 도서와 공연티켓만 판매하고, 이외 다른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사업자를 의미함.

- 사업자등록번호의 기존 가맹점번호(단말기)에서 도서 및 공연티켓 매출만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됨.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복합사업자라 하더라도 단일사업자로 예외적 인정

※ (예외- 도서 판매 사업자) 연 매출 3억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 중에서 도서 매출이 총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증빙자료 확인(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통해 단일 사업자로 인정

※ (예외-공연티켓 판매 사업자) 연 매출액 7천 5백만 원 미만 영세사업자는 증빙자료 확인(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을 통해 단일사업자로 인정

⇒ ‘복합사업자’는 소득공제 대상인 도서와 다른 재화, 공연티켓과 다른 재화, 도서·공연티켓과 다른 재화를 같이 판매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 (예시-도서) 중대형서점(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인터넷 서점(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등). 복합서점, 대형마트 및 백화점 내 입점 서점, 홈쇼핑 및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입점 서점 등

※ (예시-공연) 주요 티켓예매처(인터파크, 예스24티켓, 옥션, 티켓링크 등), 공연시설운영자(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Q06

도서 및 공연티켓만 판매하는 단일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무엇인지?

⇒ 국세청 홈택스(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과제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을 말함. 이 자료의 면세(도서 판매 등) 금액 등을 확인하여 단일 사업자 여부를 판단함.

Q07

오프라인 판매업자인 단일 사업자 및 복합 사업자가 취해야 할 기술적 조치는 무엇인지?

⇒ 단일 사업자는 도서·공연티켓만 판매하고 기존 가맹점번호에서 도서·공연비만 결제(매출 발생)하기 때문에 가맹점(신용카드사, 직불카드 등의 경우 은행)을 추가(분리)할 필요 없음.

- 다만, 매장(시설)이 본사 등과 동일한 가맹점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당해 매장(시설)의 결제 및 매출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단말기)에서 발생하도록 관리를 요청해야 함.

⇒ 복합 사업자의 경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위한 가맹점(신용카드사, 직불카드 등의 경우 은행) 분리가 필수적임. 카드사 등에 도서·공연티켓 매출만 발생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를 추가(분리) 신청해야 함. 또한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 개편 및 오프라인 단말기 추가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Q08

온라인 판매업자인 단일 사업자가 취해야 할 기술적 조치는 무엇인지?

⇒ 단일 사업자는 도서·공연티켓만 판매하고 기존 가맹점번호에서 도서·공연비만 결제(매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신용카드사, 직불카드 등의 경우 은행)을 추가(분리)할 필요 없음.

- 다만, PG사의 대표 가맹점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는 해당 PG사가 카드사 등에 개설한 대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로 도서·공연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PG사에 요청해야 함.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접수완료) 해야 함.

- 또한 PG사는 카드사 등에 별도 개설한 대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를 하위 사업자(도서, 공연티켓 판매 사이트 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연계하는 조치를 해야 함.

- * 카드사 등의 직접 가맹점 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이거나, PG사와 사업자 간 개별(단독) 가맹점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기술적 조치사항 없음.

Q09

온라인 판매업자인 복합 사업자가 취해야할 기술적 조치는 무엇인지?

⇒ 복합 사업자의 경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위한 가맹점(신용카드사, 직불카드 등의 경우 은행) 추가(분리)가 필수적임. 가맹점번호 보유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함.

- 카드사 등의 직접 가맹점번호를 보유한 경우, 카드사 등에 ‘도서·공연비 전용 소득공제 가맹점번호’를 추가 신청해야 함.
- PG사의 대표 가맹점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PG사가 개설한 대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로 결제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자 신청·접수(접수완료)를 해야 함. 해당 PG사는 카드사 등에 PG사 대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를 추가 분리하고, 하위 사업자들을 등록·연계하여 동 가맹점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PG사가 대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사용을 요청하는 하위 사업자를 등록 연계할 때, 신청·접수(접수완료) 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정보원 사이트에 검색 기능을 구현할 계획임(별도 안내 예정)
- 위 사업자 모두 공통적으로 사업자의 판매 품목(도서, 공연티켓 및 이외 재화) 등록 및 관리, 결제시스템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Q10

판매중개 플랫폼만 제공하는 온라인 판매중개업자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하고, 가맹 분리 등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지?

⇒ 단지 플랫폼만 제공하고 개별 입점 판매사업자들의 판매중개만 하는 온라인 판매중개사업자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해야 함.

⇒ 필요한 기술적 조치는 온라인 판매업자의 조치사항과 동일함.

- 다만, ‘판매 품목(도서, 공연티켓 및 이외 재화) 등록 및 관리, 결제시스템 개편 등 ‘을 ‘입점 사업자의 판매 품목 등록 및 관리, 결제시스템 개편 등’으로 보면 됨.

Q11

이미 도서·공연티켓과 그 외 상품을 별도의 가맹점번호로 결제하고 있는 복합 사업자의 경우에도 가맹점을 추가(분리)해야 하는지?

⇒ 이미 카드사 등 가맹점번호를 분리하여 도서·공연티켓과 그 외 상품을 분리 결제하고 있는 경우, 가맹점 추가(분리)할 필요 없음.

- 다만, 온라인 판매업자 또는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의 경우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에서 기존 가맹점번호를 도서·공연비 전용 가맹점 번호로 전환·관리해줘야 하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확정 후 카드사, 은행, 결제대행사(PG사, 현금영수증 사업자 등) 등에게 알려줘야 함.

Q12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오픈마켓 등) 사이트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개별 입점 사업자(이하 '입점 사업자')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하고, 가맹 분리를 해야 하는지?

* 온·오프라인에서 입점사업자 자신이 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중개업자도 아니면서 오롯이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만 활용하는 경우

⇒ 입점 사업자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해야 함.

* 입점 사업자는 사전기간('18.6.4.~6.29) 및 추가·보완기간('18.7.2.~7.31)까지 '입점 사업자 신청·접수 전용 페이지'에 간단한 기본 정보(사업자등록증, 상호명, 현금영수증사업자명, 입점 플랫폼 등)만 입력하면 됨.

- 사업자 신청·접수를 통해 보다 정확한 도서·공연비 결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해당 정보를 안내할 수 있음. 특히, 현금영수증은 실제 판매자(입점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입점 사업자가 사업자 신청·접수를 해야 현금영수증에 대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함.

- 또한, 입점 사업자가 판매중개 플랫폼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를 이용하여 도서·공연 티켓이 아닌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입점 사업자에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사업자 책임소재 강화를 위해서도 입점 사업자의 신청·접수가 필요함.

⇒ 다만, 입점 사업자는 전용 가맹점번호 추가·분리 등 기술적 조치는 필요 없음.

Q13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가 별도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판매중개 사이트 (오픈마켓 등)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신청·접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 ○○서점이 자사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직접 도서를 판매하면서, 동시에 타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에 입점하여 판매하기도 하는 경우

⇒ 직접 온라인 쇼핑몰이나 판매중개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타 판매중개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온라인 판매업자’ 또는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에 해당되며, 이 유형에 따라 사업자 신청·접수를 해야 함.

- ‘온라인 판매업자’ 또는 ‘온라인 판매중개업자’로 신청·접수한 경우, ‘입점 사업자 신청·접수 전용 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접수 할 필요 없음.

Q14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 www.culture.go.kr/deduction)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언제 해야 하는지?

⇒ 도서·공연비 전용 가맹점을 갖추고 사용금액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파악하고 국민 및 국세청 등에 제공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 사업자는 유형별로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완료한 후, 연중 수시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 할 수 있음.

⇒ 다만, '18년은 시행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사업자가 제도에 참여하도록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일('18.7.1.)에 앞서 사전 신청·접수기간을 운영함.

- 도서·공연비 전용 가맹점 추가(분리) 및 결제시스템 개편 등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업자를 위해 신청 보완, 추가 신청·접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함.

☞ (사전기간) '18.6.4.(월) ~ 6.29.(금)

- 시행일자인 7.1자부터 동 사업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오프라인 매장, 시설,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지출한 금액은 도서·공연비로 확인하여 처리 가능

☞ (보완·추가기간) '18.7.2.(월) ~ 7.31.(화)

- 신청·접수완료일자부터 동 사업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오프라인 매장, 시설,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지출한 금액은 도서·공연비로 확인하여 처리 가능

Q15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 www.culture.go.kr/deduction)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접수만 하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 되는 것인지?

⇒ 각 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접수 시 입력한 정보 및 증빙 서류, 사업자 유형, 유형별 전용 가맹점 관련 기술적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이상 없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하고 인증번호를 부여함.

- 한국문화정보원 신청·접수 전용 사이트를 통해 처리 단계(신청·접수 완료/검토중/사업자 확정)를 안내하고,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되면 각 사업자에게 확정되었음을 알릴 예정임(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발송).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인증번호는 확정 시 자동으로 부여되며, 확정 일자는 신청·접수가 완료된 일자임.

- 이는 사업자가 전용 가맹점번호 추가(분리) 및 결제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면 바로 도서·공연비 결제가 전용 가맹점번호(단말기)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기술적 조치와 행정적 조치 완료일자 간 차이를 최소화하여 사업자와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예) 사업자 신청·접수일('18.7.4.), 사업자 확정 후 인증번호 부여일('18.7.10.)의 경우, 사업자 확정일자는 '18.7.4.이며, 이 날로부터 카드사 등에서 동 사업자 가맹점에서 발생한 도서·공연비로 확인 처리

Q16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 후 입력한 정보의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신청·접수 시 입력한 사업자 유형(단일, 복합) 및 가맹점정보(가맹점명, 가맹점번호), 그 외 기본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등) 등이 변경되었거나 폐업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함. 방법은 사업자 신청·접수 절차와 동일함.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업자 로그인 정보로 접속해서 변경 가능하며,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후에는 사업자 로그인 정보로 접속해서 변경 신청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검토 절차를 거쳐 사업자 변경 확정됨.

Q17

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위해 현금영수증과 카드 등 가맹점번호를 각각 분리(추가)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만 분리(추가) 완료한 후 사업자 신청·접수를 해도 되는지?

⇒ 현금영수증과 카드 등 가맹점을 모두 분리(추가) 완료하고 사업자 신청·접수를 해야 함.

Q18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에 맞추어 도서·공연티켓 판매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하는 것이 강제사항인지? 신청·접수하지 않으면 제재조치가 있는지?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27호, '17.12.19., 일부개정) 제126조의2 제2항은 근로 소득자가 법인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로부터 도서구입, 공연관람을 위한 공연티켓 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하는 것이 강제사항은 아니며, 사업자로 신청·접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제재하지 않음.

⇒ 다만, 도서 및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자유업으로 온·오프라인에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현행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자료수집,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체계 하에서는 도서·공연비에 대한 정확한 자료수집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도서·공연비 자료 수집·제출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사업자 유형별)를 하고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통해 확정된 사업자를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안내하여, 보다 정확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Q19

공연티켓 판매 없이 단지 대관만 하는 공연장 및 단체도 사업자 신청·접수가 필요한지?

⇒ 온오프라인 상 공연티켓을 판매하지 않고, 단지 공연장 대관만 해주는 공연장, 공연시설 등 시설 운영자의 경우에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할 필요 없음.

(예) ○○체육관, ○○문예회관 등

⇒ 하지만 공연장, 공연시설 등을 대관하여 공연하는 공연단체, 공연기획사 등은 자신이 대관한 공연장·시설, 장소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에서 공연티켓 판매 행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만약 공연단체, 기획사 등이 온오프라인에서 공연티켓을 판매하고 있다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해야 함

(예) ○○뮤지컬컴퍼니(자체 공연티켓 예매창구 또는 온라인 예매사이트 등에서 공연티켓 판매)는 사업자 유형별 기술적 조치를 하고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하여야 함

Q20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접수한 극장 중 대관도 하고 공연티켓도 판매하는 극장의 경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해야 하는지?

⇒ 극장 측이 온오프라인에서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공연장 운영자인 극장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해야 함.

Q21

공연기획사, 단체가 주요 온라인 티켓 예매처 사이트를 통해 공연티켓을 위탁 판매하고 있다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해야 하는지?

⇒ 공연기획사, 단체 등이 자체 온오프라인 티켓창구 또는 예매사이트 등에서 직접 공연티켓 판매하지 않고 오로지 타 티켓 예매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면 공연기획사, 단체 등 당해 사업자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할 필요 없음.

(예) ○○티켓 사이트와 판매 위수탁 계약 체결 후 공연기획사 공연티켓 판매 대행하도록 함

⇒ 하지만, 위와 같이 자체 온오프라인 티켓 판매가 없다 하더라도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가령, 오픈마켓 등)에 입점하여 공연티켓을 판매하고 있다면 매뉴얼 사업자 유형④ ‘입점사업자’로 신청·접수하여야 함

(예) ○○극단이 온라인 여성·어린이 중소형 쇼핑물에 입점하여 아동극 티켓을 판매하고 있다면 ④ ‘입점사업자’로 신청·접수

(예) ○○음악이 오프라인 공연티켓 판매를 한다면 매뉴얼 사업자 유형①로 신청·접수해야 함

Q22

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비영리법인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가 가능한지?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은 비영리 법인**의 경우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 가능함.

- 동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에 따른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정의)에 따른 ‘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외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을 의미함.

- 다만,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단체, 전문예술단체 등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가 불가능 함.

Q23

오프라인 도서·공연티켓 판매 사업자가 ‘18.7.1.(시행일자)까지 가맹점 추가 및 분리, 내부 결제 시스템 개편 등을 완료하지 못해 사업자 신청·접수하지 못한 경우, 도서·공연비로 처리되는 시점 등은 언제인지? 시행일자로부터 소급적용 되는지?

⇒ 사업자가 복합 사업자인 경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추가(분리)가 필수이며, 이러한 기술적 조치완료 후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해야 함.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자 신청·접수가 완료된 날부터 위 사업자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에서 발생한 매출을 카드사 등에서 도서·공연비로 확인, 처리 가능함.

⇒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기존에도 도서, 공연티켓 등 공제대상 품목만을 판매하고 있던 단일 사업자라면 제도 시행일(‘18.7.1)까지 사업자 신청·접수를 하지 못하고 시행일 이후 시점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하여 확정되었더라도,

- 단일 사업자에 한하여 국세청, 카드사 등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도서·공연비 확인 등을 통해 시행일자부터 연말까지 위 단일 사업자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사이트 등)의 가맹점번호, 단말기 등에서 발생한 매출, 결제를 도서·공연비로 처리 가능함.

* (단일 사업자) 신청·접수라는 절차를 통해 기존 단일 사업자 가맹점번호를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로 관리 가능하게 됨

- 다만, 단일 사업자라 하더라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현황, 도서·

공연비 현금영수증 내역 등 정보를 일반 국민(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신청·접수를 되도록 빨리 완료할 필요가 있음

※ 일반인 누구나 '18. 6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 신청·접수 웹사이트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현황을 검색, 조회 할 수 있음

Q24

온라인 판매업자 또는 온라인 판매중개업자가 '18.7.1.(시행일자)까지 가맹점 추가 및 분리, 내부 결제 시스템 개편 등을 완료하지 못해 사업자 신청·접수하지 못한 경우, 도서·공연비로 처리되는 시점 등은 언제인지?

- ☞ 단일 사업자인 카드사 등의 직접 가맹점번호 또는 PG사-사업자간 개별(단독) 가맹점번호를 보유한 경우, 위 질문23번 답변 하단내용(단일 사업자) 참조.
 - 다만, 단일 사업자인 PG사의 대표 가맹점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PG사의 대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로 도서·공연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PG사에 요청하고, 동시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완료해야 함. PG사 대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의 하위사업자로 등록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날부터 도서·공연비로 처리됨.
- ☞ 복합 사업자인 카드사 등의 직접 가맹점번호 또는 PG사-사업자간 개별(단독) 가맹점번호를 보유한 경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를 추가(분리)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해야 함.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자 신청·접수가 완료된 날부터 위 사업자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에서 발생한 매출을 카드사 등에서 도서·공연비로 확인, 처리.
 - 다만, 복합 사업자인 PG사 대표 가맹점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PG사의 대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로 결제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해당 PG사 보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해야 함. PG사 대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의 하위 사업자로 등록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날부터 도서·공연비로 처리됨.

Q25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되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번호’ 관리를 위해 카드사 및 은행, 결제대행사 등에 어떤 사항을 알려줘야 하는지?

-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입점 사업자 제외)는 카드사, 은행, 결제대행사(PG사, VAN사 등) 등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오프라인의 경우 단말기 포함), 확정일자를 알려줘야 함.

Q26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가 고의로 도서·공연티켓이 아닌 상품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의 번호, 단말기 등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처벌 등 법령에 정한 제재가 있는지?

- ⇒ 상기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약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5항에 따라 국세청의 행정 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 조세범처벌법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을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할 수 있음.
- ⇒ ‘18. 8월 이후 국세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온·오프라인 사업자, 결제대행사 등과 협력하여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의 상품 판매, 결제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자 점검 등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 점검 후 전용 가맹점의 도서·공연비 매출, 결제에 대한 오류 정정 등 시정이 필요한 경우 후속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별도 안내할 계획임.

Q27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로 도서·공연티켓만 판매·결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번호, 단말기 등에서 도서·공연 티켓이 아닌 다른 재화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직접 판매하거나 대행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결제 등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수시 및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함.
 - 판매 대행하고 있는 위탁사(회원사)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도서구입, 공연티켓 구입비, 도서 및 공연티켓 상품 등록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함.
 - 온라인 판매중개업자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번호에서 도서·공연

티켓이 아닌 다른 재화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점 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관리해야 함.

- ⇒ 또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는 다른 상품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결제되는 것을 알게 된 즉시 사업자는 시정 조치해야 함.

Q28

사업자가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매한 개인(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소득공제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및 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구매자별 구매 정보를 보관하다가 연말 정산 시 한꺼번에 국세청에 제공(전송) 할 수 있는지?

-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8항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때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원천징수자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에서 증빙으로 첨부제출 가능한 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등이 발급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로 정하고 있음.

- ⇒ 따라서 위 법령에 따르면 신용카드등의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법적 증빙 효력을 지닌 서류 발급 주체는 국세청, 신용카드업자등*에 한정됨.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기명식선불카드업자 포함), 전자금융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등을 말함

- 결국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 직접 영수증을 보관하다가 국세청으로 전송하거나, 소득공제 관련 확인서나 영수증 등을 개인(근로소득자)에게 직접 발급할 권한이 없음.

Q29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사항이 있는지?

-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오프라인 매장(시설) 및 온라인 사이트 등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용 식별표식(사업자 확정시 부여된 인증번호, 홍보 포스터, 온라인 배너 등)을 게시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사업자 신청·접수 시 입력한 주소나 전자우편주소로

식별표식(포스터, 온라인 배너 이미지, 스티커 등)을 발송할 예정임.

⇒ 또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웹사이트 및 카테고리 개편사항 안내, 소득 공제 적용 가능한 도서·공연티켓 구입비 범위,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장바구니 분리·결제, 배송 등) 등을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오프라인 사업자는 사업장(매장, 시설, 티켓창구 등)에 스티커 및 포스터 등을 게시하고,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결제 단말기에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온라인 판매업자 및 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사이트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용 배너 이미지를 게재하고, 상품(도서, 공연티켓)을 게재할 때 각 상품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표시하는 등 업체 사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경우, 입점 사업자가 도서·공연티켓 상품을 등록할 때 소득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는 절차/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입점 사업자가 소득공제 가능 상품임을 표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Q01

도서·공연티켓 판매 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추가 및 분리를 요청할 경우, 카드사, 은행(직불카드 등의 경우), 결제대행사(PG사, VAN사 등)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 ☞ 카드사, 은행, 결제대행사 등은 도서·공연티켓 판매 사업자가 요청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을 추가 및 분리하여 도서·공연비 매출이 전용 가맹점번호에서만 발생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에서 발생한 매출 정보가 카드사 등에 전송되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자료 수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며,
 - 추가 가맹점명, 번호 부여 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전용 가맹점번호 결제 전표(영수증)에 도서·공연비 가맹점이라는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 결제 전표 내 위치 및 표시 내용 등 상세사항은 카드사 등과 결제대행사 간 결정
- 오프라인 결제대행사(VAN사)의 경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및 단말기 설치 시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가 발급한 단말기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협조.
- ☞ 아울러, 근로소득자에게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한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가맹점 추가 및 분리 등이 추진되는 만큼, 추가 가맹 처리 시 사업자의 기존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율과 동일 또는 이하 수준으로 적용 바람.

Q02

PG사 등 결제대행사가 PG사 대표 가맹점번호를 가지고 있고, 이를 여러 온라인 판매업자 및 판매중개업자(하위몰)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 ☞ PG사가 PG사 대표 가맹점번호를 여러 온라인 사업자(하위몰)들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 카드사 등에 PG사 기존 대표 가맹점번호를 추가 분리 요청하여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를 확보해야 함.
- 개별 온라인 사업자들이 ‘도서·공연비 전용 가맹점번호’ 사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를 확인하고 전용 가맹점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연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Q03

PG사 등 결제대행사가 PG사 대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를 온라인 판매업자 및 판매중개업자(하위몰)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PG사는 요청한 사업자들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 PG사의 대표 '도서·공연비 전용 가맹점번호' 연계 등 기술적 조치를 위해 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완료 했는지, 확정된 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의 신청·접수 전용 사이트에 PG사가 관련 하위몰 사업자 등 검색,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반영(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할 계획임)

Q04

PG사는 온라인 결제대행을 하는 업자이고 직접 도서·공연티켓 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아닌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 PG사의 대표 가맹점번호를 사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 및 판매중개업자가 도서 및 공연티켓을 판매, 결제할 경우, PG사명의 가맹점번호의 결제 정보가 카드사 등에 전송되기 때문에,
- 국세청, 카드사 등에서 정확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도서·공연비 매출이 발생하는 전용 가맹점 및 가맹점번호, 전용 가맹점에서의 매출, 결제 금액 등 확인·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PG사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해야 함.

Q05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을 위해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제2018-06호) 제3조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발생한 도서·공연비 현금결제 내역을 구분(도서·공연비에 해당하는 경우 “C”로 표시)하여 국세청에 전송해야 함.

Q06

A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되어 동 사업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도서, 공연티켓 등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하였는데,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동 사업자 전용가맹점 현금영수증 정보 전송 시 도서·공연비로 구분하지 않고 국세청으로 정보를 전송한 경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도서·공연비(C)로 분류하여 전송한 거래에 대해서만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으로 관리됨.

- 다만, 국세청에서 주기적으로 현금영수증사업자로부터 전송받은 현금결제 내역, 도서·공연비 구분내역,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현황 등을 대조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의 도서·공연비 전용 가맹점에서의 도서·공연비 현금결제 내역을 구분하여 전송하도록 주기적 안내할 계획임.

☞ 아울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단일 사업자에 한하여 국세청 등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도서·공연비 확인 등을 통해 시행일자부터 연말까지 단일 사업자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발생한 현금결제에 대해서는 도서·공연비로 현금결제 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전송하지 않아도 도서·공연비로 처리할 예정임.

* (단일 사업자) 신청·접수라는 절차를 통해 기존 단일 사업자 가맹점번호를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로 관리 가능하게 됨

Q07

위와 반대로, B사업자는 확정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 아닌데,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착오로 B사업자 현금결제 내역을 도서·공연비로 구분하여 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B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추가, 분리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도서, 공연티켓 구입 현금결제만 발생시켰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 국세청에서 주기적으로 현금영수증사업자로부터 전송받은 현금결제 내역, 도서·공연비 구분내역,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현황 등을 대조하여 위 질문과 같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 아닌 가맹점의 결제내역이 도서·공연비로 구분되어 전송되어 올 경우 국세청에서는 일반거래로 자료를 구축한 후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오류 코드로 안내할 예정임.

5

개인 근로소득자(구매자, 소비자) 관련

Q01

일반국민들은 어디에서 어떤 사업자(서점, 공연장 등)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조회할 수 있는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현황을 조회, 검색할 수 있음.

- 또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는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식별표식(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을 부착하여 일반국민들이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함.

Q02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 아닌 곳에서 도서·공연을 구매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 연말정산 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공연티켓 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한 자료가 수집(전송)되어 국세청, 신용카드업자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이를 위해 도서·공연비 전용 가맹점을 갖추고 사용금액 자료를 수집·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파악하여 일반국민, 국세청 등에 관련 사업자 현황 및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음

- 결국, 근로소득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도서와 공연티켓을 구매할 경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추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며, 기존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그대로 받을 수 있음.

Q03

소비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임을 알리는 스티커 등 식별표식을 믿고 해당 사업자 매장, 시설 등에서 판매하는 도서·공연티켓을 구매하였으나, 이후 알고 보니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 아니어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위 해당 금액이 포함 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결제한 것이 아니어서 국세청, 신용카드업자등이 도서·공연비로 확인할 수 없기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어려움.
- ⇒ 다만, 상기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 제9조 과세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있음.

Q04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 아닌 곳에서 도서·공연티켓을 구매하고, 연말정산할 때 소비자가 당시 구매 영수증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영수증에 적힌 사용 금액에 대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8항에 따라 근로 소득자가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때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원천징수자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에서 증빙으로 첨부제출 가능한 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등이 발급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로 정하고 있음.
- ⇒ 따라서 위 법령에 따라 신용카드등의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법적 증빙 효력을 지닌 서류 발급 주체는 국세청, 신용카드업자등*에 한정됨.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기명식선불카드업자 포함), 전자금융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등을 말함
- 따라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도서·공연티켓 구매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여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없음.